저장 : 이지원 / 주택과 (2024-06-10 15:20:40)

저장 : 이지원 / 주택과 (2024-06-10 15:20:40)

주	무관	계 장	과 장	국장
				전결 2024.
				6. 5.
0	지원	김장춘	민경수	유원향
협				
조				

등록번호	주택과-23205
등록일자	2024. 6. 5.
결재일자	2024. 6. 5.
공개구분	비공개(5)

- 저소득층 장애인의 주거생활 편의증진 향상을 위한 -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시업 추진계획



사 졘 졈 토 항 목

:::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 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 토 항 목	검 토 여 부 (■ 표시))	
시 민 참 여 (의견수렴, 공론화) 고 려 사 항	 시 민 : 유 □ (이 해 당 사 자 : 유 □ (전 문 가 : 유 □ (기 타 : 유 □ () 무 [) 무 [) 무 [
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	 법 령 규 정 : 유 □ (자 치 법 규 : 유 □ (기 타 사 항 : 고용효과 □ 규제 □) 무 [) 무 [취약계층 [유지관리 비용 [) 무 [
행 정 내 부 거 버 넌 스 검 토	 업무가능성: 유□(소통·협조: 유□(거버넌스 추진: 유□(부서내 협력□ 부서간 협력□) 무 □) 무 □) 무 □ 국별 협력□ 기티]]] }
행 정 외 부 거 버 넌 스 활 용 검 토	● 관 계 기 관 : 유 □ (● 민 간 단 체 : 유 □ (● 기 타 사 항 : 유 □ () 무 [) 무 [) 무 []
언 론 홍 보 계 획	 홍 보 계 획 : 보도자료 □ 기자설명회 □ 현장 기타 □ (설명회 □ 기획보도) 없음 □	. 🗌
인 구 증 대 방 안	전입여부확인 : 유□ (인구증대 검토 : 유□ () 무[) 무[
데 이 터 기 반 행 정	● D A T A 활 용 : 유 □ (● 활용DATA 종류출처 : 유 □ () 무[) 무[

- 작성요령-
- 1. 시민참여(의견수렴, 공론화) 고려사항
 - 시민 등 의견을 수렴하였거나, 의견수렴 또는 공론화 계획이 있는가?
 - 의견수렴(공론화) 대상 및 기실적, 계획일정 등을 명시
- 2. 법령 및 기타 고려사항
 - 사업추진과 관련한 법령 또는 자치법규(법규 명시)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는가?
 - 사업추진에 영향이 미치는 범위에 대한 판단
- 3. 행정내부 거버넌스 검토
 - 타업무·부서와의 거버넌스 추진이 가능한 업무인가?
 - 거버넌스 추진을 위해 업무간, 부서간 소통·협조를 실시하였는가?
 - 소통·협조를 통해 거버넌스 추진결과(계획)
- 4. 행정외부 거버넌스 활용검토
 -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외부기관·단체 등과의 소통·협조·추진 등이 필요한가?
- 5. 언론홍보 계획
- 6. 인구증대 방안
 - 사업추진과 관련한 대상자 등의 전입여부를 확인하였는가?
 - 사업추진에 따른 인구증대가 가능 사업인지 미리 검토하였는가?
- 7. 데이터기반 행정
 - 주요업무 추진 시 데이터 분석 사업인가?
 - 활용데이터 종류 및 출처는 어디인가?

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계획

저소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장애인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생활 도모

■ 추진근거

- 「장애인·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법」제15조(주택개조비용 지원)
- 2024년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추진계획

■ 사업개요

- (사업내용) 장애인 거주 주택 시설개선 지원
 - ▶ 주택 출입로·경사로 보수 및 설치, 외부화장실 개조
 - ▶출입문, 손잡이, 바닥, 현관, 거실, 부엌, 침실, 욕실 등 시설개선
- (사 업 량) 20호
- (**사 업 비**) 76,000천원(국비50%, 도비15%, 시비35%)
 - ▶호당 380만원 이내(재료비 및 인건비, 부가세 등 포함)
 - ▶ 지원 대상주택과 장애인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 서 소요비용을 가감할 수 있음(호당 최대 150%범위 내)
- (**지원대상**)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**등록장애인**
 - ▶장애인 자가 및 임차주택 모두 지원(임대주택은 주택소유주 동의 필요)

■ 세부추진계획

- (신청접수) 2024. 6. 10.(월) ~ 6. 21.(금)
- (신청장소)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
- (사업기간) 2024. 6월 ~ 11월
- (소득기준)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* 이하인 자 (주거약자 지원법 시행령 제7조)

<통계청 발표(`24.2.29) 기준>

구 분	1인 가구	2인 가구	3인 가구	4인 가구	5인 가구
2024년	3,482,964	5,415,712	7,198,649	8,248,467	8,775,071
2023년	3,353,884	5,005,376	6,718,198	7,622,056	8,040,492
(변동분)	+129,080	+410,336	+480,451	+626,411	+734,579

* 6인 이상 가구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(788,211원) 합산 산정

- (산정방법) 등록장애인 세대의 세대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출
 - * 전산상으로 소득 확인 불가 시 ①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료 조회 ② 국세청(원천징수영수증, 근로소득 지급명세서, 소득금액증명) 등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
- (대상주택 선정방법)
 - ① 우선순위

	• 중위소득의 50% 이하							
	<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-150호, 기준 중위소득>							
1순위	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							
	금백원월 2,228,445 3,682,609 4,714,657 5,729,913 6,695,735 7,618,369 8,514,994							
	*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: 1인 증가시마다 896,625원씩 증가(8인가구: 9,411,619원)							
2순위	•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							
경합시 선정 기준	① 장애등급이 높은 자로서 지체, 뇌병변, 시각 장애인 ② 가구원 중 ①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다수인 가구 ③ 지체, 뇌병변, 시각 장애와 다른 장애 유형이 중복된 장애인 가구 ④ 65세 이상 고령 장애인 ⑤ 주택개조가 시급한 주택에 거주하는 장애인 등 ⑥ 동일 순위 내 소득이 적은 장애인							

② 지원 제외대상

- ▶ 3년 이내 본 사업과 타 집수리사업으로 지원받은 가구
- ▶ 수선유지급여 사업 대상자
- ▶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
- ▶ 불법건축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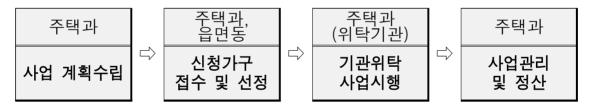
■ 지원대상 주택 및 편의시설

- (**주택기준**) 「주택법(제2조)」에 해당하는 '주택 등*
- * 비닐하우스, 컨테이너, 움막 등 비정상적인 거처는 주택개조비용 지급 부적합 대상이 나, 건축신고 또는 허가를 받은 경우는 지원 가능
- (신청기준) 자가주택은 세대주(또는 보호자)가 신청,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해당 임대주택을 임차한 장애인(또는 보호자)의 협의* 후 일방이 신청
- * 임대인은 임차한 장애인 또는 보호자(장애인복지법 32조)에게 4년간 임대의무 필요

- (설치기준) 주택 내의 편의시설 개선 등을 원칙으로 하고, 편의시설 종류 및 기준은 「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편의시설 설치기준」을 적용
 - ▶ 다만,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과 개보수, 거주주택과 연결하는 출입·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의증진 목적의 시설개선은 포함
 - ▶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(도배장・판 등 마감공사)도 가능
 - ▶ 재래식 화장실 개조(지체장애인이거나 그 밖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인 경우)
- (편의시설 선정) 지원대상 거주주택 상태와 장애인 유형·등급 등을 먼저 조사한 후, 장애인 등의 의견*을 충분히 반영하여 맟춤형으로 설치

■ 추진방법

- 집수리사업 수행능력과 경험이 있는 기관에게 위탁시행(20호)
 - ※ 주택 개조 비용을 지원가구에 직접 교부 불가
- 추진체계



■ 추진일정

○ 사업홍보(고시공고, 익산시 홈페이지, 보도자료) : 2024. 6월~

○ 대상자 신청 접수 : 2024. 6. 10. ~ 6. 21.

○ 대상자 선정 : 2024. 6월

○ 집수리 기관 위탁계약 체결 : 2024. 7월

○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: 2024. 7월 ~ 11월

○ 사업완료 및 정산 : 2024. 11월

붙임 사업신청서 및 동의서 서식 1부. 끝.